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19 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 송옥주 · 임미애 · 이병진

박해철 • 윤준병 • 이수진

어기구 • 문금주 • 김남희

김태년 • 박 정 • 이원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농산물의 수급과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풍·가뭄·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대응하기 어려움. 또한,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고 이로인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왜곡되어 그 피해를 농가가 떠안는 실정임.

한편 현행법은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, 가격의 폭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, 계약생산 제도와 가격폭등 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, 국가 식량 안보의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 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.
- 나.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생산재배이행 지원제도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6조제4항 신설).
- 다. 농산물의 가격 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9조의3 신설).
- 라.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도를 도입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- 마.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의 선정,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둠(안 제16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6조의 제목 "(계약생산)"을 "(계약생산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계약 생산 및 계약출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는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 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을 보 전할 수 있으며, 자체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를 우대할 수 있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제도 실시 등에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"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"를 "농산물의 과잉생산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채소류 등"을 "농산물"로 한 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정부 관리 농산물의 판매
 - 2. 생산자 관련 단체, 저장업자, 도매업자·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 산물의 판매 지원
 - 3.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공
 - 4.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책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농산물가격안정제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

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 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 여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,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제16조의3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대상 품목의 선정
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
- 3. 차액의 지급비율
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- 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행의 주기
- 6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어야 한다.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2.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
-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7조제2항에 제2호의3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2의3.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

2의4.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

2의5. 제9조의3에 따른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계약생산) ① (생 략)	제6조(계약생산 등) ① (현행과
<u><신 설></u>	같음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<u>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</u> 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
<신 설>	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계약 생산 및 계약출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③ 정부는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시장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 생산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,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자체 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.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이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및생산자를 우대할 수 있다.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
	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

② (생 략)<신 설>

제9조(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수 있다. 다만,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.

- ②・③ (생 략)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채소</u> 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・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⑤ (생략)

에 세물하고 국외 소판 상임위
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u>⑥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⑦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
제4항에 따른 지원제도 실시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①
<u>농산물의 과잉생산으로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농산물</u>
· 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9조의3(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 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정부 관리 농산물의 판매
- 2. 생산자 관련 단체, 저장업자, 도매업자·소매업자 등이 보 유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
- 3.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 공
- 4.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책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 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 원할 수 있다.

제16조의2(농산물가격안정제도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,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제3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

<u>산물의 시장가격이</u> 기준가격 [평년 가격(직전 5년 중 최저가 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)을 기준으로 하 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 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 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 다]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(이하 "농산물가격안정제도"라 한다) 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농 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 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 여 실시할 수 있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채소, 과일 등 농산물가격 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

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

<신 설>

<u>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</u> 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·고시된 농산 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(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 지급비율을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
제16조의3(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)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<u>1. 대상 품목의 선정</u>
- 2.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

- 3. 차액의 지급비율
- 4. 적정 재배면적,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
- 5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행의주기
- 6.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1.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

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

 하는 공무원
- 2.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

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

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지출한다.

1. ~ 2의2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<<u>신</u> 설>

3. ~ 5. (생략)

③ ~ ⑤ (생 략)

<u>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</u>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

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7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
2 -----

-----.

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
2의3.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 행

2의4.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2의5. 제9조의3에 따른 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